

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제2호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호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항 제6호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제1항제6호”를 “제3항제6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“자율활동, 봉사활동”을 “자율·자치활동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학교폭력조치상황관리: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및 그 내용

제22조제2항 중 “행동특성 및 종합의견”을 “학교폭력조치상황관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”을 “학교폭력조치상황관리에 기록된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”으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2호 및 제3호의 사항”을 “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사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.

1.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조치사항: 졸업일로부터 2년

2.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: 졸업일로부터 4년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학교생활기록의 보존에 관한 적용례) ① 제21조제1항제2호, 제3호 및 제6호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제6호와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.

1. 2024년 3월 1일: 초등학교 1학년,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
2. 2025년 3월 1일: 초등학교 1~2학년, 중학교 1~2학년 및 고등학교 1~2학년
3. 2026년 3월 1일: 초등학교 1~3학년, 중학교 및 고등학교 전체 학년
4. 2027년 3월 1일: 초등학교 1~4학년, 중학교 및 고등학교 전체 학년
5. 2028년 3월 1일: 초등학교 1~5학년, 중학교 및 고등학교 전체 학년
6. 2029년 3월 1일: 초등학교, 중학교 및 고등학교 전체 학년

② 연도별로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작성에 관한 적용례) ① 제2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.

1. 2024년 3월 1일: 초등학교 1~2학년
2. 2025년 3월 1일: 초등학교 1~4학년,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
3. 2026년 3월 1일: 초등학교 1~6학년, 중학교 1~2학년 및 고등학교 1~2학년
4. 2027년 3월 1일: 초등학교, 중학교 및 고등학교 전체 학년

② 연도별로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1조(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) ① 법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“학교”라 한다)의 장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를 학교생활기록으로 작성하는 경우 그 기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1조(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학적사항: 학생이 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졸업한 학교의 이름, 졸업 연월일 및 재학 중 학적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날짜·내용 등. <u>이 경우 학적 변동이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조치사항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그 내용도 적어야 한다.</u>	2. ----- ----- ----- ----- <u><후단 삭제></u>
3. 출결상황: 학생의 학년별 출결 상황 등. <u>이 경우 출결상황이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사항에 따른 것인</u>	3. ----- -- <u><후단 삭제></u>

경우에는 그 내용도 적어야 한다.

4. · 5. (생략)

6.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: 학교교육 이수 중 학생의 행동특성과 학생의 학교교육 이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견 등. 이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해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도 적어야 한다.

② 제1항제6호 후단에 따라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받은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적어

4. · 5. (현행과 같음)

6. -----

----- <후단 삭제>

② 제3항 제6호

야 한다.

1. · 2. (생략)

③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서 “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과 그 기재내용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· 2. (생략)

3.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: 학생이 재학 중 실시한 자율활동, 봉사활동, 동아리활동 및 진로활동 등

4. · 5. (생략)

<신설>

④ · ⑤ (생략)

제22조(학교생활기록의 관리·보존 등) ① (생략)

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으로 기록된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----- 자율·자치활동-----

4. · 5. (현행과 같음)

6. 학교폭력조치상황관리: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및 그 내용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학교생활기록의 관리·보존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학교폭력조치상황관리-----

-----.

제해야 한다.

③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. 다만,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이 졸업하기 직전에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 기구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.

1. 학적사항으로 기록된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

2. 출결상황으로 기록된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사항

3.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으로 기록된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제7호의 조치사항

③ -----
----- 학교폭력조치상황관리에 기록된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---. ---
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사항-----

-----.

1.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조치사항: 졸업일로부터 2년

2.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: 졸업일로부터 4년

<삭 제>

④ (생략)

④ (현행과 같음)